

적격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안산상공회의소 경비·미화 관리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계약담당부서는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제3조(적격심사) ① 입찰참가 예정자는 용역입찰공고에 기재된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서류접수 마감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입찰참가 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충분하여 심사가 원활히 하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4조(입찰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관련 제출서류를 입찰참가 신청 마감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일 이후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용역실적의 증명 등) 용역실적의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용역이행실적에 의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경비·미화 관리 용역, 종합건물관리용역(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 경비·주차관리용역 및 청소관리용역 전체를 직접 관리운영)을 1년 이상 직영한 업체가 수행한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제8조(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방법) 적격심사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

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 등을 준용한다.

【별표1】

경비·미화 관리 위탁용역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계			100
I. 사업수행 능 력	1. 이행실적	가. 건물규모(연면적) 나. 실적금액	6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3. 신인도	가.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나. 최근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관련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 1 ~ -1 -2
II. 결격사유	1. 수행능력 결격사유	가. 최근 1년 이내에 부실용역으로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I-1. 이행실적 평가(6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점)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1) 규 모 (실적면적)	(1) 100% 이상	35
		(2) 90% 이상 ~ 100% 미만	32
		(3) 80% 이상 ~ 90% 미만	29
		(4) 70% 이상 ~ 80% 미만	26
		(5) 60% 이상 ~ 70% 미만	23
		(6) 60% 미만	20
	2) 금 액 (실적금액)	(1) 100% 이상	25
		(2) 90% 이상 ~ 100% 미만	23
		(3) 80% 이상 ~ 90% 미만	21
		(4) 70% 이상 ~ 80% 미만	19
		(5) 60% 이상 ~ 70% 미만	17
		(6) 60% 미만	15

1) 규모는 안산상공회의소 회관 연면적(17,350.03㎡) 기준

2) 금액은 안산상공회의소 회관 실적금액(연간 2.7억 원, VAT 별도) 기준

《참고사항》

- ① 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경비·미화 관리 위탁용역, 종합건물관리용역(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용역, 경비·주차관리용역 및 청소관리용역 전체를 직접 관리운영) 실적 중에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업무용 단일건물(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업무시설 중 아파트 제외)을 1년 이상 관리한 실적에 한하며, 단일 건물 하나의 실적만 인정함
다만, 단일 계약 건으로 하나의 단지 내에 복수의 건물이 있을 경우 단일 건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 1동의 규모가 업무용으로 15,000㎡ 이상이어야 함.
- ②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산관리사(PM)로부터 수주한 계약실적은 인정한다.
- ③ 주용도가 업무용 빌딩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기타 면적이 업무시설면적의 30% 이하일 경우 전체를 실적면적으로 인정하되 30% 초과시는 30%만 인정하고, 공용면적은 업무시설 면적 비율만큼 인정한다.
- ④ 실적은 발주처가 확인하고 용역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된 것만 인정함.

I -2 경영상태 평가(4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4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4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

- ※ 주) 1.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